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마권 구매한도액(1회 10만원) 규정〉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76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마권 구매한도액(1회 10만원)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 23.

다. 회 부 일 : 2024. 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사회로 하여금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발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그런데도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여 적발한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매년 수천건 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마사회의 적절한 이용자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과도한 베팅 자제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마권 구매한도액(1회 10만원)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마권의 발매 주체인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입장료) ① ----- -----제6조제3항-----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생략)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마사회는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마권 구매상한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상한을 법률로 정하기 보다는 마권 실거래 확인을 위한 전자마권 발행 등 융통성 있는 정책 시행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만, 필요 시 마권 구매상한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보다 융통성 있게 법을 집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한국마사회

구매상한 법제화를 통한 합법 사행산업 규제는 불법 사행산업 및 조세포탈 확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합법 경마의 축소는 마사회 매출 및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져 축산발전기금 등 공공재원 마련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검토 필요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타 경주류의 구매상한 관련 규정과의 통일성을 감안하여 “1회에”를 “1경주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권 구매상한제 준수의 실효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반시 처벌 규정 필요

다. 검토 의견

현행법은 마사회가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정하도록 함.¹⁾ 마사회는 경마시행규정 시행세칙²⁾ 및 승마투표약관³⁾에서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마권을 구매하는 방법은 ① 유인발매창구, ② 자율발매기, ③ 전자카드가 있음.

【 마권구매 방식별 구매절차 비교 】

구분	경마		
	① 유인발매창구	② 자율발매기	③ 전자카드
매출총량 한도	사감위 매출총량 ⁴⁾		
구매한도	1인 1회 10만원 이상 가능		1인 1회 10만원 이상 불가능
구매절차	유인발매창구 또는 자율발매기에서 현금으로 구매		실명회원가입(비대면) → 예치금 충전 → 계좌 발매기 또는 전용 모바일 앱으로 구매
구매장소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 자료: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 법무지원부 제출(2025. 3. 12.)

1) 「한국마사회법」

제24조(규정) 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② 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경마시행규정 시행세칙」

제103조(구매 상한액 등) ① 회장은 마권을 발매할 때 마권 구매자가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이하 “구매상한액”이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승마투표약관」

제8조(발매시간 및 발매금액) ② 마권은 100원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며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합니다.

※ 1984년 마권구매상한액을 1회 50만원으로 제한한 이후, 1985년 30만원, 1986년 2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1994년부터는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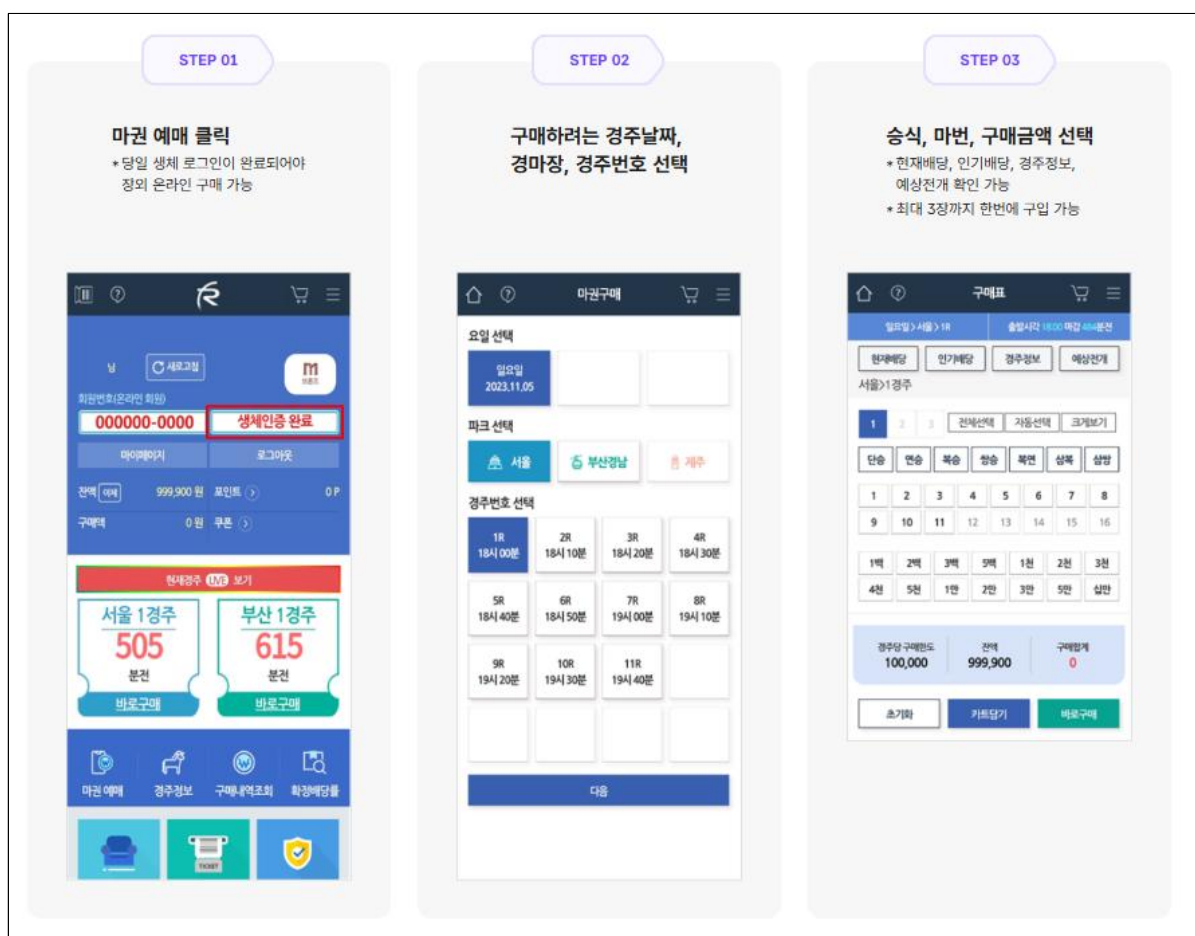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체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②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상기 ③ 전자카드제의 경우 마사회 전용앱(더비온, DerbyOn)에 회원가입 후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서 실명을 기반으로 마권을 구매하는 제도로써 해당 앱 이용 시 1인 1회 10만원의 구매한도를 초과하여 마권 구매가 불가함.

【 전자카드 마권 구매 방법 】



※ 한국마사회 제출(2025. 4. 18.)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정기준 및 방법) ○ 사행산업 전체 매출총량 설정(당해년도 예상 GDP의 0.51% 수준) → 업종별 순매출액 구성 비율에 따라 업종별 배분 → 도박중독 유병률 및 건전화평가 결과 반영 → 사행산업별 매출총량 최종 설정(사감위 전체회의 의결)

(매출총량 초과 및 전자카드 목표 미달시 제재사항) ✓ 사감위는 사감위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기본부담금을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로 정하고, 건전화평가 결과 20%, 총량준수 결과 10% 등 최대 40% 부담금 감면

✓ 당해연도 매출총량 초과분에 대해 차년도 매출총량 설정시 불이익: 초과한 금액 전부를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감액하여 구성비율 산정[사감위법 시행령 [별표] 총량기준(제2조제1항 관련)]

그런데, ① 유인발매창구, ② 자율발매기의 경우 ③ 전자카드제와 달리 마권 구매 시 실명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 함)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여 적발한 구매상한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8,870건에 달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실시한 한국마사회 경마 구매상한 위반현황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점검횟수(회)	50	80	257	308	254	949
위반건수(건)	480	428	2,601	2,935	2,426	8,870
회당 위반건수(건)	9.6	5.4	10.1	9.5	9.6	9.35회

※ 자료: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 법무지원부 제출(2025. 3. 12.)

이와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마권 구매상한 위반이 반복됨에 따라, 마사회의 이용자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연간 2천여 건의 마권 구매 상한 규정 위반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구매상한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출입 금지나 판매 직원 징계 등 실효성 있는 조치보다는 계도·홍보 위주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과,

유사 사행산업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 및 복권(로또 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1회당 구매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 사행산업별 구매상한 운영 현황 】

구분	구매상한	근거	처벌조항
한국마사회 (경마)	1회 10만원 이하	승마투표약관(자체규정) 제8조제2항	없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1경주 10만원 이하	승자투표약관(자체규정) 제7조제2항	없음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포토)	발행회차별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회차별 1인 10만원 이하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동 시행령 제37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민간 사업자)
복권 (로또 등)	한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인 1회 10만원 이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동 시행령 제3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민간 사업자)

※ 자료: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 법무지원부 제출(2025. 3. 12.)

마사회가 1인당 1회 10만원의 구매상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구매자의 과도한 마권 구매를 방지하고,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마사회로 하여금 1인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사실상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가능한 점에서, 경마 고객의 신분노출 및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매상한 관련 판례⁵⁾ 】

< 수원지방법원 2003. 11. 21. 선고 2003가단16203 >

「...마권구매한도제한의 일탈·회피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각 마권 판매시에 마권을 구입하는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각 구입자의 구매액을 각 판매소를 통합한 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상정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조치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박 목적이 없는 이용자들에게는 사생활침해라는 또 다른 법익 침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의 보호가 반드시 마권구매한도의 규제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어,...(이하 생략)」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가합55684 >

「...이와 같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전자카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선의의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하 생략)」

※ 자료: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 법무지원부 제출(2025. 3. 12.)

둘째, 경주마의 컨디션 등 상태 점검 등으로 인해 마권구매의 상당수가 경주 시작 직전(발매 마감 5분 전)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5) 경마고객인 원고가 마사회에 대해 구매한도 초과 구매를 방치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두 사건 모두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함(특히 2003년 사건은 대법원까지 다투었으나 원고 패소 확정됨(大判 2004다50174))

【 발매 마감까지 시간대별 마권 매출 비중 】

구분	발매 개시~ 마감 5분전	마감 5분 ~ 4분전	마감 4분 ~ 3분전	마감 3분 ~ 2분전	마감 2분 ~ 1분전	마감 1분전~마감	계
건수	2,220,092	399,428	465,288	547,440	605,537	1,467,486	5,705,271
비율	38.9%	7.0%	8.2%	9.6%	10.6%	25.7%	100%
61.1%							

※ 자료: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 법무지원부 제출(2025. 3. 12.)

※ 2024. 1. 28. 기준

’24년 기준 일 평균 6만 3천여명에 달하는 경마고객에 대하여 마권 발매 시마다 경주별 구매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국내 타 사행산업의 경우도 현금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하여 마권 구매상한을 규정할 경우 실명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카드’로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사감위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불법 경마 규모가 합법경마 매출 수준의 132.2%에 육박하는 수준임.

이와 같이 불법경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마권 구매상한을 규정하고, 구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경우 익명성 보장을 원하는 이용자 등을 불법사설 경마 또는 다른 불법사행산업으로 이탈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불법경마 규모 추정(사감위 불법도박 실태조사) 】

구분	제1차(2008)	제2차(2012)	제3차(2016)	제4차(2019)	제5차(2022)	A/B
불법경마 규모(A)	2조 6,885억원	7조 5,728억원	10조 3,275억원	6조 8,898억원	8조 4,536억원	132.2%
합법경마 매출(B)	7조 4,219억원	7조 8,397억원	7조 7,898억원	7조 3,572억원	6조 3,969억원	

※ 자료: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 법무지원부 제출(2025. 3. 12.)

넷째, 경마 시행 주요국의 마권 구매 상한 현황을 살펴보면, 최대 배팅금액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홍콩”의 경우에도 1회 최대 배팅금액이 약 ‘935만원’으로, 개정안의 ‘10만원’ 보다 큰 폭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경마 시행 주요국 구매 상한 현황 】

국가	구매상한 내용
미국	· 최대 배팅금액에 대한 규정 없음
영국	· 최대 배팅금액에 대한 규정 없음 · 라이선스 업체별로 최대 당첨 지급액을 명시 (25만 파운드~200만 파운드, 한화 약 4억5,183만원~36억 1,468만원)
일본	· 최대 배팅금액에 대한 규정 없음(마권 1장당 최대 50만엔(약 500만원)까지 배팅 가능하나 마권을 여러 장 살 수 있음) · 최대 당첨 지급액은 6,000만엔(약 5.4억원)으로 명시
홍콩	· 홍콩 자키클럽 홈페이지에 최대 배팅금액 명시 · 1회 최대 배팅금액 HK\$50,000(한화 약 935만원) · 1일 배팅 계정당 최대 배팅금액 HK\$500,000(한화 약 9,350만원)
프랑스	· 프랑스 도박법(French Gambling Law)에 최대 배팅금액에 대한 규정 없음
호주	· 각 주별 도박법이 있으며, 최대 배팅금액에 대한 규정 없음
싱가포르	· 싱가포르 도박 관련법에 최대 배팅금액에 대한 규정 없음
마카오	· 마카오 도박법(Macau Gambling law)에 최대 배팅금액에 대한 규정 없음

※ 자료: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 법무지원부 제출(2025. 3. 12.)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마권 구매 상한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유사 입법례와 같이 마권 구매 상한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행산업 구매상한 위반 관련 처벌규정 】

사행산업 사업자	구매상한 의무내용		근거	위반 시 처벌내용
복권위원회 (복권)	1인 1회 10만 원 이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제2항, 동 시행령 제3조	판매정지, 계약해지 판매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회차별 1인당 10만원 이하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6항, 동 시행령 제37조제3항	판매정지, 계약해지 판매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2항 제2호)
강원랜드 (내국인카지노)	테이블 게임	테이블별 1인 1회 10만 원 이하 (다만 전체 테이블 중 1/2 범위에서 1인 1회 30만 원 이하)	관광진흥법 제28조제2항, 동 시행규칙」 [별표10]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저축 - (1차) 시정명령 - (2차) 사업장10일 - (3차) 사업장1개월 - (4차) 사업장3개월 (법 제85조 제1항 12호) [별표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11호(사업정지 처분 같음) - 2천만원 (법 37조 시행령 34조)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목 - (1차) 100만 원 - (2차) 100만 원 - (3차 이상) 100만 원 - (법 제86조 제2항 4호)
	머신 게임	1인 1회 2천 원 이하 (다만 비디오 포커 게임은 2천5백 원 이하)	관광진흥법 제28조제2항, 동 시행규칙」 [별표10]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5호	

※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독지도과 제출(2025. 3. 12.)

문 의 처

02)6788-5414

2-2 구매상한제 운영 개선

□ 실 태

- (시대환경 변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 및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구매한도(1회 10만원)는 고정***
 - * 1인당 국민총소득(GNI): ('94) 832만원 → ('22) 4,249만원 ⇒ 510% 상승 (94년도 경마기최저)
 - **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기준): ('94) 49.8 → ('22) 107.8 ⇒ 216% 상승
 - *** 구매한도 설정시기: 경마('94), 경륜·경정('06), 카지노('03), 복권('04), 투표권('00), 소싸움('11)
- (만성적인 구매상한 미준수) 구매상한 미준수가 사행산업 영업현장 지도감독 전체에서 80%('22년 기준)를 차지, 이는 법령상 규제 미비 및 이용자 인식부족, 제도 운영의 현실성 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 (구매상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미흡) 구매상한은 유병률, 매출추이, 구매행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해야 하나, 각 부처에서 체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
- (불법도박으로의 풍선효과) 수십년 전 정해진 구매한도는 불법도박 참여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2)) 불법도박 참여 이유: 합법 대비 더 많은 현금금, 높은 접근성, 배팅금액 무제한, 익명성, 편의성 등

□ 세부과제

- ① 구매상한제도 운영 관련 부처간 협의체 구성
 - 구매상한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관리정책의 통일성 확보
 - (상한액 주기적 설정) 사행연구센터를 통해 산업동향, 국내외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5년 주기(종합계획 평가 병행)마다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구매상한액 재검토·재설정
 - (위반시 페널티 신설) 현재 구매상한 위반시 처벌규정 미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 등을 통한 사업자 책임성 강화
 - * (예시) 관할부처에 시정요구 또는 사업자 대상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조치

② 온라인 구매상한 적정성 진단

- (온라인 적정 상한액 권고) 온라인 발매제 도입 평균 7년차*(24년 기준 기점으로 온라인 발매 영향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현황 진단 후 온라인 구매상한도 적정수준 진단
 - * 24년 기준 온라인 발매도입 경륜경쟁(21) 4년차, 복권(18) 6년차, 체육진흥투표권(04) 21년차
 - ** 온라인 발매제 도입 후 관련 업종별 유병률 추이, 구매상한 미준수 증감 비율 등 분석, 구매상한 초과와 유병률 등의 상관관계 등 검토

③ 내국인-외국인 구매상한 차등 제도 연구

- (내국인) 현행과 동일하게 구매상한 적용(상한액 조정은 별건)
- (외국인)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상한 적용 완화 검토(관광 산업 진흥, 세수확보 등)
 - * 외국인 전용시설, 전용발매, 내·외국인 배당 차등 문제 등 고려하여 검토

④ 구매상한준수 지표 체계적 관리로 사업자 책임성 강화

- (구매상한준수 지표 개발·관리) 구매상한준수 지표(핵심 관리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자별 온·오프라인 구매상한준수 관련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운영
 - * 세부사항은 1-1. 핵심 관리지표 발굴·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참고
-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구매상한준수 지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 * (인센티브/페널티) 총량 증액, 부담금 감면, 건전화평가 가점 등 / 총량 감액, 건전화평가 감점 등
- (실명구매율 지표와 목표 연동 운영) 구매상한 준수율 우수시 실명구매 확대 목표를 소폭 조정
 - * 구매상한 준수율↑→실명구매 확대율↓(소폭 확대) / 구매상한 준수율↓→실명구매 확대율↑(대폭 확대)

□ 기대효과

- 사행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구매상한제도 개선으로 불법도박 시장으로 유입되는 원인 제거 및 만성적인 미준수 문제 개선

참고2 전자카드 이용 목표 설정 주체, 기준 및 방법

□ 설정주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설정기준 및 방법

- ('19~'23년도) 사감위 주관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회의('19.5월) 통해 연도별 이용목표 설정 → 환경변화 반영, '21~'23년 이용목표 상향 조정('21.9월)

* 사감위 사무처장, 민간전문가(4명), 사행사업자 임원(6명)으로 구성, 전자카드 이용활성화 등 모색

구 분	목 표(%)			(사 감 위) 목 표 설 정 방 법 및 사 유 등
	'21	'22	'23	
매출액 비중	26.8	28.4	30.0	■ (조정) '23년 기준 5.0%p 상향(증가율 ↑16.7%) ■ (방법) 최근 3개년 실적('18~'20.2.) 및 전자카드 전용승식 도입*('22년 1월 목표)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설정 * 전자카드 전용승식 미도입
(상향조정)	29.2	33.6	35.0	■ (사유) 코로나19로 2년간 정상영업 어렵고, 온라인 발매 도입 시기 불투명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달성 가능한 목표치 설정
발매건수 비중	37.6	38.8	40.0	■ (조정) '23년 기준 15.6%p 상향(증가율 ↑39.0%) ■ (방법) 최근 3개년 실적('18~'20.2.) 및 전자카드 전용승식 도입('22년 1월 목표)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설정
(상향조정)	46.2	53.3	55.6	■ (사유) 매출액 비중 설정방법과 동일

- ('24년도) 사업별 특수성, 경영여건, 과거와 미래 실적 추이 고려
사감위→사업자 달성 목표치 설정·통보

- 사감위 부여 전자카드(실명구매) 이용목표 : 매출액 40.5%, 발매건수 64.4%

※ 자료: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 법무지원부 제출(2025. 3. 12.)

참고3 최근 (2017~2024)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추이

□ 총매출

(단위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마	78,015	75,376	73,572	10,890	10,476	63,969	65,007	65,139
경륜	21,744	20,515	18,337	3,509	3,792	16,864	16,416	15,665
경정	6,369	6,210	5,994	680	1,513	6,209	6,514	6,257
복권	41,538	43,848	47,933	54,152	59,753	64,292	67,517	73,349
체육진흥 투표권	41,991	47,428	51,099	48,928	56,195	58,090	61,367	60,103
소싸움	304	273	267	26	229	296	271	304
카지노 (국내)	15,230	14,001	14,816	4,435	7,750	12,235	13,202	13,641
총계	207,208	209,669	214,037	124,640	141,729	221,956	230,294	234,458
경마 비중	37.7%	35.9%	34.4%	8.7%	7.4%	28.8%	28.2%	27.8%

※ 자료: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 경영관리처 법무지원부 제출(2025. 3. 12.)